

CEO Report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2016. 7

황인창 · 조재린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I. 검토배경	1
---------------	---

II. EU Solvency II의 경과조치	3
--------------------------------	---

1. 도입 배경	3
----------------	---

2. 주요 내용 및 효과	5
---------------------	---

III. 결론 및 시사점	8
---------------------	---

〈부록 1〉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흐름	10
-----------------------------	----

〈부록 2〉 EU Solvency II - 주요 특징	11
-------------------------------------	----

〈부록 3〉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5) 주요 결과	13
-------------------------------------	----

I. 검토배경

■ 향후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¹⁾에서 보험부채 시가 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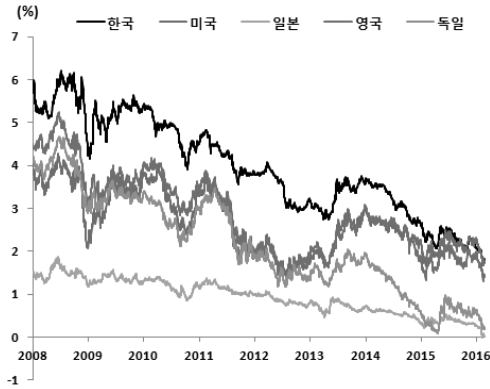
- 현행 국내 지급여력평가는 보험부채 원가평가에 기초한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바탕으로 함.
- 향후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신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함.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부채 가치 증가로 인한 자본 감소로 RBC 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여 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음(그림 I-1 참고).
 - 2016년 2월 말 기준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8%대 수준
- 국내 보험회사(특히, 생명보험)는 금리 하락 시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장기 상품으로 인해 이차역마진이 확대됨.
 - 2015년 6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고금리 확정형 계약(5% 이상)의 비중은 30.8%임(표 I-1 참고).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미래 예상 손실이 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RBC 비율이 급락할 수 있음.

1)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1> 참조.

그림 1-1 주요국 국채 금리



주: 만기 10년.
자료: 연합인포맥스.

표 1-1 적립이율 및 운용자산이익률

구분		보험료적립금		운용 자산 이익률	금리차
		비중	적립 이율		
생 보 사	확정형 (5.0%↑)	43.3 30.8	6.4		
	연동형	56.7	3.7		
	전체	100	4.8	4.4	-0.4
손 보 사	확정형 (5.0%↑)	6.9 2.7	5.4		
	연동형	93.1	3.5		
	전체	100	3.6	4.1	0.5
전체			4.6	4.3	-0.3

주: 2015년 6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따라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로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뿐만 아니라 경과조치도 필요한데, EU Solvency II가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보임.

- EU Solvency II는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함.
-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계량영향평가(QIS; Quantitative Impact Study)를 바탕으로 EU Solvency II는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뿐만 아니라 경과조치(transitional measure)를 도입함.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에서는 EU Solvency II의 연착륙 장치 중 하나인 경과조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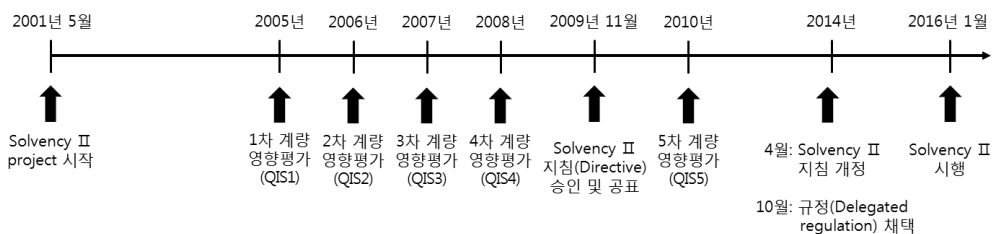
II. EU Solvency II의 경과조치

1. 도입 배경

■ 2016년 1월 EU는 부채시가평가 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 체계인 Solvency II²⁾를 시행함.

- 유럽경제구역(EEA)에서 영업 중인 중·대형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EU 차원의 단일 재무건전성 감독 체계임.
- Solvency II 도입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 선진화, EU 시장 통합, EU 보험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임.
- EU는 Solvency II 도입을 위해 2001년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수차례 계량영향평가를 거친 이후 2016년 1월부터 시행함(그림 II-1 참고).

그림 II-1 EU Solvency II 도입 경과



2) EU Solvency II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2> 참조.

■ EU는 새로운 지급여력평가제도(Solvency II)의 연착륙을 위해 수년간 여러 차례 계량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5차례의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여 Solvency II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
- 당초 201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4년 및 2016년으로 2차례 시행 연기
- 부채평가 할인율을 정할 시 장기선도이자율(UFR; Ultimate Forward Rate) 활용, 변동성조정(VA; Volatility Adjustment) 및 매칭조정(MA; Matching Adjustment)의 금리가산 등을 도입

■ 특히, 2011년 EIOPA에서 실시한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에 따르면, Solvency II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SCR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14.9%를 차지하였고, MCR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 보험회사도 4.7%에 달하였음.³⁾

■ 이러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EU는 2016년 1월 Solvency II 시행 이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도입함.

- 2014년 4월 경과조치를 추가하도록 지침(Solvency II Directive)을 개정(Omnibus II Directive)하고, 세부규정을 마련함.

3) QIS 5 주요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3> 참조.

2. 주요 내용 및 효과

- EU Solvency II의 주요 경과조치는 크게 가용자본, 요구자본, 자본요구조건,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 등으로 나눌 수 있음(표 II-1 참고).
- 가용자본 측면에서의 주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의 점진적 반영, 가용자본의 분류 및 인정 범위 완화가 있음.
 - Solvency II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을 경과조치 기간(16년) 동안 점진적으로 반영
 - 책임준비금 금액 또는 책임준비금 산출에 이용되는 무위험이자율을 점진적으로 반영
 - Solvency II 도입 시 강화되는 가용자본의 분류 및 인정 범위를 경과조치 기간(10년) 동안 구제도(Solvency I) 수준으로 완화
- 요구자본 측면에서의 경과조치는 주식리스크,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의 단계적 반영이 있음.
 - Solvency II 도입 전에 취득한 주식 관련 리스크를 경과조치 기간(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
 -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를 경과조치 기간(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
- 또한, Solvency II 도입 시점에서 구 제도(Solvency 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새 제도(Solvency I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2년)을 줌.

- 마지막으로 Solvency II 보고 및 공시에 필요한 자료(예,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등)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4년) 동안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연장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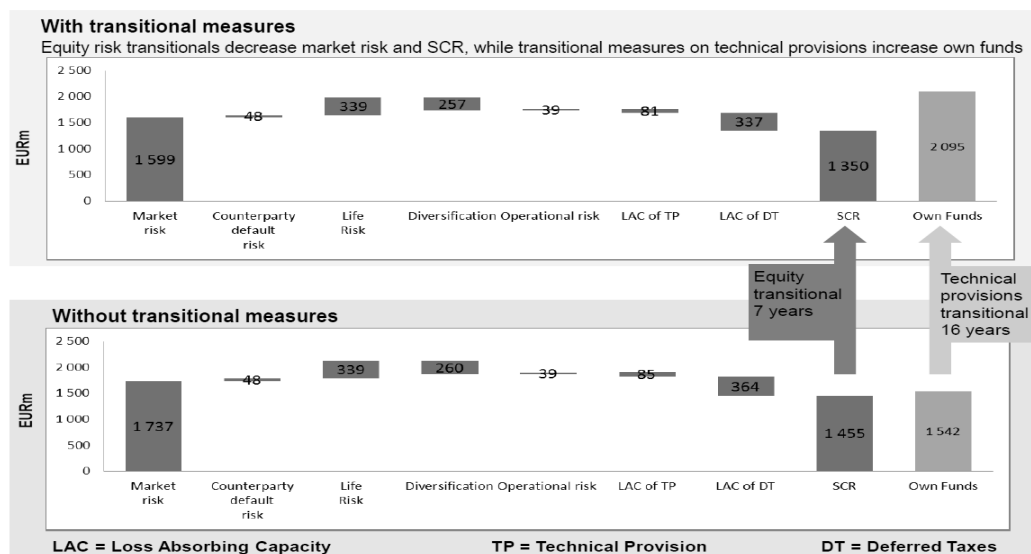
표 II-1 EU Solvency II의 주요 경과조치

경과조치			세부 내용	적용기간
가 용 자 본	책 임 준 비 금	책 임 준 비 금 액	Solvency II 도입 전후의 책임준비금 금액 차이를 적용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무위험이자율 경과조치와 동시 적용 불가)	16년간 선형 이행
		무위험 이자율	Solvency II 도입 전후의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적용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책임준비금 금액 경과조치와 동시 적용 불가)	16년간 선형 이행
	분류 및 인정		Solvency II 도입 전에 인정한 가용자본을 Solvency II 도입 후에도 인정	10년
요 구 자 본	주식 리스크		Solvency II 도입 전에 취득한 주식 관련 리스크를 적용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	7년간 선형 이행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를 적용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	4년간 단계적 이행 2016~17: 100% 면제 2018: 80% 면제 2019: 50% 면제 2020: 조치 완료
자본요구조건			구제도(Solvency 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Solvency II 최초 적용 시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을 줌	2년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			적용기간 동안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연장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4년 연간보고: 20주 → 14주 분기보고: 8주 → 5주

■ EU Solvency II 경과 조치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그림 II-2 참고).

- 주식리스크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요구자본이 14.55억 유로에서 13.50억 유로로 감소
- 책임준비금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가용자본이 15.42억 유로에서 20.95 유로로 증가
- 따라서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SCR 지급여력비율이 106%(=15.42/14.55)에서 155%(=20.95/13.50)로 증가

그림 II-2 EU Solvency II 경과조치 효과 예시



자료: Sampo Group(2015).

■ 현재 유럽 상당수의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점진적 반영 등 지급여력평가에 영향이 큰 경과조치를 각국 금융당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음.

- 예를 들어, 영국 Aviva Life and Pensions UK Ltd.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금융당국에 신청하여 승인받음.

III. 결론 및 시사점

- 부채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국내 도입 시 EU Solvency II에서 활용한 경과조치를 벤치마크하여 연착륙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U Solvency II는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경과조치들을 도입함.
 - 경과조치 도입은 새로운 규제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기존 가용성에 대한 간섭을 제한⁴⁾
- EU Solvency II에서 활용한 주요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음.
 - 가용자본: 책임준비금의 점진적 반영, 가용자본의 분류 및 인정 범위 완화
 - 요구자본: 주식리스크,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의 단계적 반영
 - 자본요구조건 유예기간 제공,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 연장
- 특히, 국내에서는 가용자본과 관련된 경과조치(책임준비금 금액, 무위험 이자율 등)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의 연착륙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4) Solvency II: transitional measures and the treatment of participations(PRA 2015).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급락하면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선행적으로 충분히 수행하여 구체적인 경과조치 방식 및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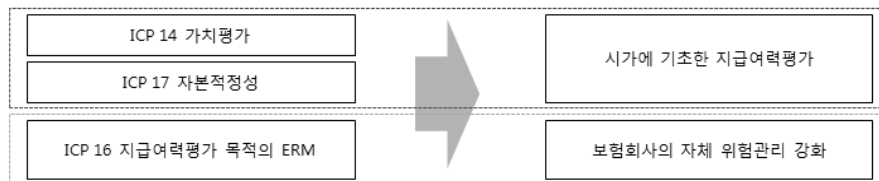
- 부채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부채시가평가방안, 시행시기 등과 함께 적절한 경과조치 방식 및 기간이 결정되어야 함.
 - 경과조치 설계 시 부채시가평가로 인한 가용자본 영향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요구자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영향평가의 준비, 실행, 결과, 반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도설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부록 1.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흐름

-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2011년에 새롭게 제시한 보험핵심준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을 통해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를 권고함(부록 그림 1-1 참고).

부록 그림 1-1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ICP 기준



- 세계 각국은 IAIS ICP가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FSAP;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Program)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자국 보험감독규정에 ICP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
 - FSAP는 IMF와 세계은행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매 5년마다 회원국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
 - 금융부문 국제기준 충족 관련 업권별 핵심준칙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은행: 바젤 핵심준칙, 증권: IOSCO 핵심준칙, 보험: IAIS 핵심준칙, 금융시장인프라: CPSS-IOSCO 금융시장인프라 준칙)
 -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ICP와 EU Solvency II 사례를 토대로 지급여력평가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개혁 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ICP와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임.



부록 2. EU Solvency II -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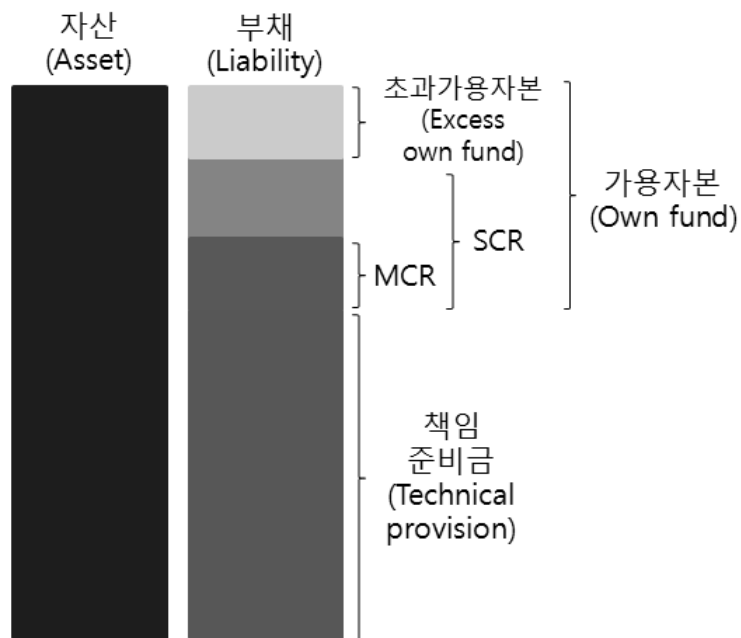
■ EU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 산출(정량평가) 시 주요 특징으로 자산·부채 시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총재무제표방식(total balance sheet approach) 사용, 리스크 중심의 경제적 요구자본 도입 등이 있음(부록 그림 II-1 참고).

- EU Solvency II는 정량평가(pillar1), 정성평가(pillar2), 공시(pillar3)의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가정을 이용하여 자산·부채를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치를 가용자본으로 인식함.
 -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함으로써 잠재적인 리스크에 따른 지급여력 변화를 즉각적으로 측정·인식함.
- 요구자본을 지급능력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⁵⁾과 최소요구자본(MCR; Minimum Capital Requirement)⁶⁾으로 이원화하고 규제를 차별화함.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SCR에 미달하는 경우 SCR 충족을 위한 시한 및 방법 등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MCR에 미달할 경우 인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시행함.

5) SCR은 향후 1년 동안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이 0.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목표 자본수준을 의미함.

6) MCR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수준을 의미함.

부록 그림 II-1 EU Solvency II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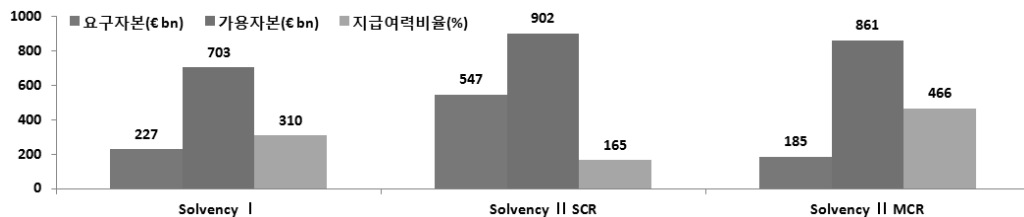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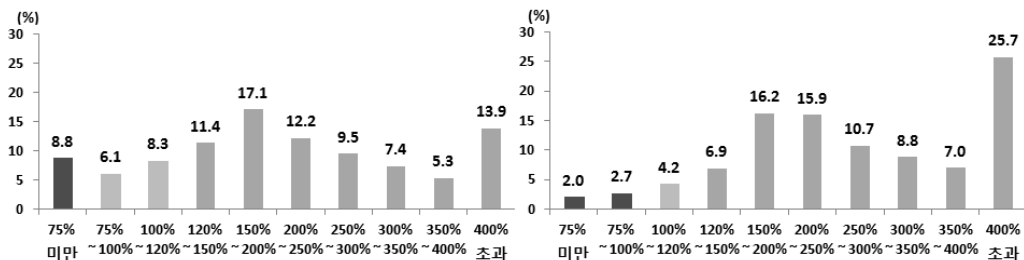
부록 3.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 주요 결과

- 2010년 하반기 EIOPA는 각국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Solvency II 준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를 실행함.
 - 보험그룹 167개를 포함한 총 2,520개 보험회사가 참여(Solvency II 대상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95%, 보험료 85% 이상을 차지)
-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을 Solvency I (310%)과 비교하면, SCR 지급여력비율(165%)은 감소하나 MCR 지급여력비율(466%)은 증가함(부록 그림 III-1 참고).
- 개별 회사별로 보면,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상당수 존재함(부록 그림 III-2, 3 참고).

부록 그림 III-1 지급여력비율 비교



부록 그림 III-2 SCR 지급여력비율 분포 부록 그림 III-3 MCR 지급여력비율 분포



자료: EIOPA(2011).

저자약력

■ 황 인 창

KAIST 경영공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ichwang@kiri.or.kr)

■ 조 재 린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jrincho@kiri.or.kr)

CEO Report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발행일	2016년 7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3775-9043)로 연락하여 주십시오.